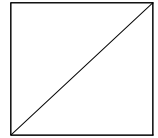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3 호	심 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22. 3. 29. (제 38 회)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의 운영위원회

제 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제출 연월일	2022. 3. 29.

1. 의결주문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인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현장중심 연구제도 개선절차의 의의

- ① 국가연구개발 체계화와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 ② 연구기관과 과제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연구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고도화

나. 2022년도 연구제도 개선절차 운영경과

- ① 기본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과기정통부, '21.12~'22.2월)
 - 현장 애로 파악 및 국가연구개발의 도전성 강화 등을 위한 연구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제도개선위원회 의견 수렴
 - * 주제별, 주체별, 권역별 및 정책전문가 의견 수렴
- ② 기본지침 마련 (과기정통부, '22.3월)
 - 현장 연구자 및 제도개선위원회 (3.11) 등 민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2022년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침을 마련

다. 2022년도 연구개발 제도개선 기본지침

① 범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연구개발혁신법」 취지 현장 정착

- 부처별(전문기관 포함) 상이한 용어·절차·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대비 완화할 수 있는 사항 혁신법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 등 정비
- 연구기관 내부규정·관행 등을 포함한 현장 연구자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혁신법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혁신법이 운영되는지 점검
- 과거 공동관리규정 대비 혁신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 특성 등이 반영되지 못해 연구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해소

* 출연(연) 기본사업, 국립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등

② 선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기반 강화

- 도전·혁신적 연구수행에의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 수행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연구수행 경로 등 유인체계 및 사업 체계 개선 검토
- 국제협력의 활성화 등 국가연구개발의 개방성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비 사용 등의 유연성 강화 및 행정부담 완화 등 검토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경우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일반시민 등 기술수요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③ 선도적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자 지원 강화

-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및 연구윤리 확립 등 연구기관 자체 책임성 확보 지원
- 학생 및 박사후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모색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역할 강화를 위한 간접비 원가산출방식 개선 및 신뢰성 높은 회계자료 수집을 위한 회계시스템 개선 방향 검토

④ 제도개선의 원칙 확립

- 제도개선이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자율성 원칙 확립에 집중하고,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을 우선 검토
- 신속한 애로해소 등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잦은 제도변화로 인한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제도변화 횟수 최소화

라. 향후계획

- ❶ 연구제도 개선 의견 제출 (관계부처('22.4월), 연구현장('22.4월 ~ 5월))
 - 연구현장, 부처(전문기관) 등은 기본지침을 고려한 '제도개선 의견 제출서(붙임)'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제안
- ❷ 제도개선안 검토·수립 (과기정통부, '22.5월 ~ 8월)
 - '제도개선 의견 제출서'를 제도개선위원회의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안(과기자문회의 심의) 수립·통보
- ❸ 연구제도 개선 (관계부처, '22.9월 ~)
 - '22년도 연구제도 개선안에 따라 후속조치 실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

2022.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 차

I.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의의 및 근거	1
II. '22년도 연구제도 개선절차 운영 경과	2
III. '22년도 제도개선 기본지침	3
1. 범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연구개발혁신법」의 취지 현장 정착 ...	4
2. 선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기반 강화	5
3. 선도적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자 지원강화	6
4. 제도개선의 원칙 확립	7
IV. '22년도 제도개선 향후계획	7
붙임. 제도개선 의견 제출서 양식	9
참고1.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및 현장의견수렴 추진 경과 ...	11
참고2. 2021년 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 결과	12

I.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의의 및 근거

1 의 의

- 선도적 연구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체계화와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을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제도*(이하 '연구제도') 개선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그 하위규정, 각 부처의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시책 등을 포괄
-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로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고 사회문제 해결 등 과학기술의 파급효과가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 국가연구개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고,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보다 나은 연구환경을 달성하는 법 취지의 지속 추진
 - 각 부처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취지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며, 연구기관·과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 체감형으로 제도 고도화

2 운영 근거 : 「연구개발혁신법」 제28조~제30조

- **(법 제28조)** 정부는 매년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누구든지 연구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음
- **(법 제29조)** 연구제도 개선의 체계화된 절차 마련

- **(제1항)** 과기정통부는 당해년도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작성(과기자문회의 심의)하고 3월31일까지 관계부처에 통보
- **(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을 과기정통부에 4월30일까지 제출
- **(제3항)** 과기정통부에서는 제도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과기자문회의 심의)하고 8월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
- **(제4항)** 관계부처별로 다음연도 소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반영

- **(법 제30조)** 연구기관이 운영하는 내부규정과 이에 근거한 활동에 대해 정부에서 개선 권고(과기자문회의 심의)하고, 이행 실태 확인·점검

Ⅱ. '22년도 연구제도 개선절차 운영경과

① 기본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 연구현장 애로 파악 및 국가연구개발의 도전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연구현장 의견 수렴 경과('21.12.~'22.2.)>

- (주제별) 국제협력, 도전혁신, 사회문제 해결 등 연구 성격에 따라 의견수렴
- (주체별) 산학협력단, 출연연, 기업 등 연구개발기관 특성에 따라 의견수렴
- (권역별) 서울충청강원, 호남, 영남 등 각 권역의 전문가 의견수렴
- (기 타) 정책 전문가 등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 제도개선 전 과정에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산·학·연 전문가로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범 ('22.1월)

- ☞ 제도개선위원회·과기정통부가 함께 제도개선 기본방향 및 연구현장 의견 우선순위 등을 검토

② 기본지침 마련 (과기정통부, '22.3월)

- 현장 연구자·제도개선위원회 등 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2022년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침을 마련

* 제도개선위원회 상정 및 의견 검토 (3.11)

<제도개선위원회 주요 검토 의견>

- 다양한 혁신 주체의 참여, 예산 운영의 유연성 확보 등 사업별 특성을 반영
- 자율성 확대 및 투명성·책임성 담보를 위한 제도개선 지향
- 혁신법 이후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를 해소

Ⅲ. '22년도 제도개선 기본지침

목표

선도 연구의 기반이 되는 연구자 친화적 R&D 제도 정착

추진 방향

① 범부처 협력으로 「연구개발혁신법」의 취지 현장 정착

- 1) 혁신법 취지에 맞는 부처별 규정정비
- 2) 혁신법 운영 현황 현장 점검
- 3) 연구주체·사업 특성에 따른 애로 사항 해소

② 선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 기반 확립

- 1) 유인체계 등을 통한 도전·혁신성 제고
- 2) 국제협력 활성화 등 연구환경 개방성 확립
- 3) 사회문제 해결 등 국가연구개발의 활용성 강화

③ 선도적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자 지원 강화

- 1) 선도적 연구문화 및 연구규범 조성
- 2) 청년연구자 지원 확대
- 3) 간접비 산출방식 개선 등을 통한 연구지원 모색

④ 제도개선 원칙 확립

- 1) 자율성과 책임성 담보를 위한 원칙 확립
- 2) 신속한 애로해소 등 제도개선의 실효성 제고

1) 혁신법 취지에 맞는 부처별 규정 정비

- 부처별 상이한 용어·절차·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대비 완화할 수 있는 추가 제한, 혁신법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 등 정비
 - 각 부처는 혁신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비한 과제 또는 정비할 과제를 포함하여 범부처 정책 정합성을 제고
 - 「연구개발혁신법」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전문기관의 규정 및 업무 관행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개선 추진

< 부처별 및 전문기관 R&D 관리규정 점검 추진 계획 >

- ▶ (‘22.1~2월, 과기정통부) 각 부처에 소관 규정 점검계획을 안내하고 자체점검 요청, 각 전문기관에 자체규정 현황 및 애로사항 등 요청
- ▶ (~’22.3월, 각 부처·전문기관) 자체점검 결과(각 부처) 및 자체규정 현황, 애로사항 등 제출
- ▶ (~’22.6월, 과기정통부) 부처·전문기관별 제출자료 검토(전문가 회의 등) 및 환류
 - 부처·전문기관별 애로사항에 대한 소통 추진
 - 부처별 점검결과 등에 대한 환류 실시, 정비 필요사항 개선 등 요청
- ▶ (’22하, 과기정통부) 정비 이행상황 공유점검, 부처·전문기관별 애로사항 등 협의 지속 추진

2) 혁신법 운영 현황 현장 점검

- 혁신법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혁신법이 운영되는지를 점검
 - 온라인 제도개선 제안*을 통해 연구기관 내부규정·관행 등을 포함하여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분야별 민간 전문가(산·학·연)가 검토
- ※ IRIS를 통해 혁신법과 부정합한 연구기관 내부규정을 포함하여 제도개선사항 발굴(’22.4.~6.)

3) 연구주체·사업특성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

- 과거 공동관리규정 대비 혁신법이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 특성 등이 반영되지 못해 연구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해소
 - * 출연(연) 기본사업, 국립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등
- 현장 요구 중 시급한 사항은 제도개선(안) 확정 전에도 선(先) 제도개선

1) 유인체계 등을 통한 도전·혁신성 제고

- 도전·혁신적 연구수행에의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 수행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 및 사업 체계 개선 검토
 - 도전·혁신적 연구 수행 시 동일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경로 탐색 및 맞춤형 연구수행 경로 등이 가능한 방안 등 검토

2) 국제협력 활성화 등 연구환경 개방성 확립

- 국제협력의 활성화 등 국가연구개발의 개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사용 등의 유연성 강화 및 행정부담 완화 검토
 - ※ (예시) 해외 우수 연구자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 전임교원 부임 시 인센티브 지급 등
 - 단,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대외환경을 고려하여 개방성을 확대하면서도 중요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은 강화

<국가연구개발 사업 보안고시(8개부처공동) 주요 내용 (규제심사중)>

- ▶ 보안과제분류 위원회를 통해 보안과제 여부를 분류하고 관련 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는 등 절차 마련
- ▶ 외국인이 보안과제에 참여하거나, 보안과제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연구자가 외국과제에 참여하거나 외국인과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접촉 시 보고하는 등 관리 강화
- ▶ 성과 실시 시 제3자 실시 금지 및 기술이전 시 보안 의무 이전 명시 (외국 이전실시의 경우 장관 승인)
- ▶ 보안수당 등 보안과제에 대한 인센티브 등 규정, 보안사고 조사절차 등

3) 사회문제 해결 등 국가연구개발의 활용성 강화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경우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검토
 - R&D 기획, 수행, 평가 등 전 과정에서 과학기술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 시민 등 기술 수요자 및 인문사회 전문가 등의 역할 강화 지원
 - ※ (예시) 일반시민의 연구 참여 시 비용 계상 등의 편의성 제고
 - 다양한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기술개발 참여를 촉진 (예 : 대기업·공기업 등)

1) 선도적 연구문화 및 연구규범 조성

-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선도적 연구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 연구현장 자체 책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윤리 등 연구규범 조성 지원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 연구윤리 각 분야별 일반적인 개념정의, 행동양식 및 연구개발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자체규정 예시를 포함하여 제시

분야	주요내용
연구진실성	1. 연구진실성 개념 2. 연구진실성 확보 노력 3. 연구진실성 보호·관리 체계
학문교류	1. 학문교류 개념 2. 학문교류의 진실성 3. 정보의 보호
인간동물실험	1.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실험 개념 2. 인간 대상 연구 규정 및 책무 3. 동물 실험 연구 규정 및 책무
건전한연구실문화	1. 건전한 연구실 문화 개념 2. 연구자 권익보호 3. 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및 갈등 관리 4. 연구실 내 소통 강화 5. 연구자 안전 및 건강 보호
연구윤리 교육	1. 연구윤리 교육 목적 2. 연구윤리 교육 내용 3. 연구윤리 교육 방법 4. 교육 시기
예시규정	▶ 연구기관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모범규정 예시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이후 이와 정합성을 맞춘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분야를 반영하여 연구윤리 길잡이 업데이트 추진 ('22.5월)

2) 청년 연구자 지원 확대

- 학생 및 박사후 연구자에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모색
- ※ (예시) 과기정통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상향 검토,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인식 제고, 감액 최소화 등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개정 검토(안) 예시 >

구분	현행	개정안(예시)	비고
학사과정	월 100만원 이상	월 130만원 이상	동 금액 이상으로 연구개발기관 별 자율 설정
석사과정	월 180만원 이상	월 220만원 이상	
박사과정	월 250만원 이상	월 300만원 이상	

3) 간접비 체계 개선방안 모색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역할 강화를 위한 간접비 원가산출방식 개선 및 신뢰성 높은 회계자료 수집을 위한 회계시스템 개선 방향 검토

1)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원칙의 확립

- 제도개선이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자율성 원칙 확립에 집중하고,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을 우선 검토

2) 신속한 애로해소 등 제도개선의 실효성 제고

-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되, 잦은 제도변화로 인한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규정 개정 시기는 일원화하여 제도변화 횟수 최소화

IV. '22년도 제도개선 향후계획

① 제도개선 의견제출 (관계부처('22.4월), 연구현장('22.4월 ~ 5월))

- 연구현장, 부처(전문기관) 등은 기본지침을 고려한 '제도개선 의견 제출서(붙임)'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제안
 - 법령 시행 이후 제도개선 필요 사항 및 기본지침에 제시된 기본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제안
- 기본지침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도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에서 제안하는 제도개선 과제 및 개선방안 적극 반영

< 상시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 >

- 온라인 소통창구(익명제안 가능)를 통해 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을 접수
 - ※ IRIS 활용, 「연구개발혁신법」 해석 문의 창구와 별도 운영
- 연구현장의 공감도, 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안 반영 여부 결정

② 연구제도개선안 검토·수립 (과기정통부, '22.5월 ~ 8월)

- '제도개선 의견 제출서'를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안(과기자문회의 심의) 수립·통보
- 연구현장, 부처 등에서 제안한 과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3년도 이후 제도개선안에 반영

③ 연구개발 제도개선 (관계부처, '22.9월 ~)

- '22년도 연구제도 개선안에 따라 부처별로 소관 법령 및 행정 규칙 등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

※ 작성 방향

① 「연구개발혁신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안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신설되거나 개선된 제도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 및 기준에 관한 제안

※ 법 시행 이후 규정 변화가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포함

- ☐ 「연구개발혁신법」과 부합하지 않는 부처별 R&D규정, 전문기관의 업무 관행, 연구기관별 내부규정·관행에 대한 개선의견

② 관계부처·연구현장에서 개선 수요가 있는 제안

- ☐ 범부처적인 적용이 필요하거나, 다양한 유형의 연구분야 및 연구기관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개선 제안
- ☐ 부처별·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기준 적용이 필요한 사항 제안
- ☐ 창의적·도전적 연구수행을 저해하거나, 창출된 성과의 활용을 저해하는 연구제도의 규제요인에 대한 개선 의견

③ 구체적인 제안

- ☐ 제도개선 제안의 이행을 위한 구체성에 대하여 검토

○○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 제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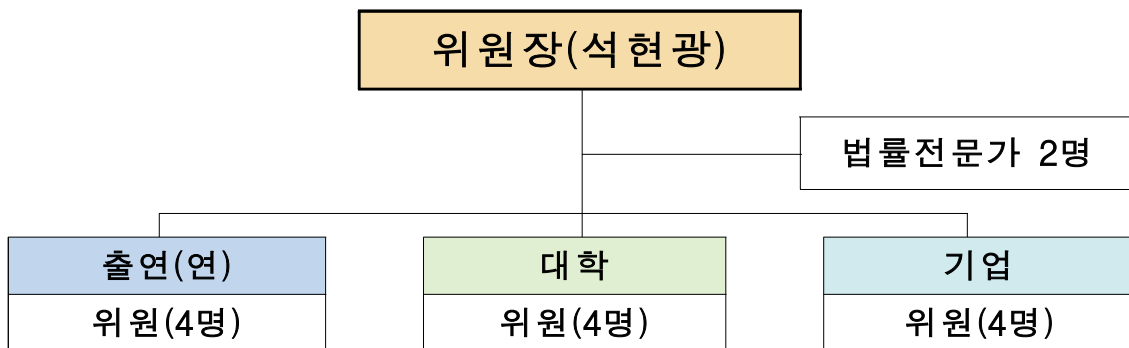
구분	부처명	부서명	직위	이름	전화번호
주관기관	○○부	○○국 ○○과	국장	-	-
			과장	-	-
			사무관	-	-
유관기관	○○진흥원		본부장	-	-
	-		-	-	-

1. 제도개선 제안명:	
2. 관련 근거	※관련 법령 및 자체 규정 등
3. 제안 목적	
4. 현황 및 문제점	※ 제도운영 현황 및 문제점 요약 기술
5. 발굴경로	□ 연구자 민원, □ 정책연구, □ 자체조사(설문, 통계 등), □ 업무처리과정 중 자체 발굴, □ 기타 ※선택한 항목 관련 자료를 [붙임]으로 제출
6. 제도개선 의견	※ 제도 개선 방안 요약
예시	※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면 상황을 구체적으로 예시
7. 규정 개정안	※ 규정명, 조항, 전후대조가 가능하도록 기재
8. '22년도 제도개선 방향 과의 관련성	
9. 기대효과	

※ 표로 작성이 어려울 경우 1~9번 항목을 구분하여 자유형식 작성 가능

□ 제도개선위원회 구성·운영 개요

- (구성) 총 15명으로 대학, 출연(연), 기업 3개 분과로 구성
 - ※ 위원장 1명, 분과별 위원 4명, 법률전문가 2인 등 총 15명으로 구성
- (운영) 정부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현장의 민간전문가 시각에서 검토하고(~'223월), 연구현장 의견수렴 결과의 시의성·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안 검토(~'228월)
 - ※ '22년 1월 26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약 7개월간 운영 (1월~8월)



□ 주요 추진경과

- (제도개선위원회) 제도개선 기본 방향 설정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 의견 및 혁신과제(안)을 도출('22.1~2월)
- (연구현장 간담회) 연구현장 제도개선 수요 반영을 위해 사업별(도전혁신, 사회문제, 국제협력), 산학연, 권역별 전문가 간담회 등 실시 ('21.12~'22.2월)
- (제도개선위원회) 위원회 회의를 통해 연구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혁신과제(안)을 토대로 시급성·중요성을 검토('22.3월)

□ 향후 계획

- 온라인 연구현장 의견수렴('22.4~5월) 결과 검토, 시의성·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사항 등을 선정 및 분류 ('22.6~8월)

주요 추진과제	관련법령 제·개정
① 간접비 집행이 어려울 경우 과제 종료 후 2년까지 저작물 출판비용 직접비 지원 강화	연구비 사용기준 개정완료 ('21.12)
② 타 학교 학생까지 학생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사용의 유연성 확대	시행령 개정 완료 ('21.12) 연구비 사용기준 개정완료 ('21.12)
③ 다양한 연구노트 형식을 허용하여 연구노트 작성·관리의 자율성 제고	연구노트 지침 개정완료('21.12)
④ 연구실 운영비 사용의 자율성 강화 검토	혁신법 매뉴얼 반영 검토 중
⑤ 연구비 선집행 제도의 현장안착 촉진	혁신법 매뉴얼 개정 ('22.상)
⑥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포기절차 명확화	혁신법 매뉴얼 개정 ('22.상)
⑦ 경쟁형R&D 활성화를 위해 중단근거 마련	시행령 개정완료('21.12)
⑧ 국제 R&D협력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제공동연구비 계상허용 기관 확대	시행령 개정완료('21.12) 연구비사용기준 개정 완료 ('21.12)
⑨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 체계화	보안고시 제정 추진중 ('22.상)
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비용 집행 근거 마련	시행령 개정완료('21.12)
⑪ 신진연구자의 인건비 지급 여건 개선 (대학의 박사후 연구자가 연구 중단 시 간접비로 인건비 계상 허용)	시행령 개정완료('21.12)
⑫ 학생산재보험비 간접비 계상 등 연구 안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시행령 개정완료('21.12) 연구비사용기준 개정 완료 ('21.12)
⑬ 단순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처분기간 합리화	시행령 개정완료('21.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제도혁신과	
담당자	박경미 사무관
연락처	전 화 : 044-202-6954 E-mail : parkkm@korea.kr